「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김낙관 의원 외 10인

3. 제안이유

○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·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～제4조)

다.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～제6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·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여, 보조금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.

-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 지원 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'중복지원 금지'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어 타 법령이나 사업과의 중복 수혜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.

- 또한, 안 제5조제4호의 홍보 및 교류 활동 지원 시에는 단순한 견학이나 교류를 넘어 회원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예산 투입 대비 고도의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기획이 요구됨.

- 아울러 안 제5조 제2호와 제3호에 명시된 교육·연구 활동 및 시민 안보의식 개선 사업이 형식적인 강연에 그치지 않고,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